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33
----------	------------

제안년월일 : 2016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정원진흥실시계획의 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5년마다로 기간을 설정하고,
- 정원지원센터의 설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2. 주요 골자

- 정원진흥실시계획의 기간 명시 (안 제7조)
- 서울정원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으로 명명하고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생략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를 “서울시민”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강구해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강구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정원법 제6조제1항”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으로, “수립·시행”을 “5년마다 수립·시행”으로 한다.

안 제16조의 제목 “(서울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를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또한 “제 3항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센터 운영에”를 삭제한다.

안 제1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제1항에 따른 지역 거점형 정원지원사업”으로, “대행토록”을 “위탁”으로 한다.

안 제18조 중 “정기 또는 수시로 박람회”를 “박람회”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u>강구해야 한다.</u></p> <p>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u>노력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u>강구한다.</u></p> <p>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u>노력한다.</u></p> <p>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u>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u></p>	<p>제1조(목적) -----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 ----- <u>서울시</u> <u>민의</u> ----- ----- -----.</p> <p>제3조(시장의 책무) ----- ----- ----- ----- <u>마련하여야 한다.</u></p> <p>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 ----- ----- <u>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 ----- <u>마련하여야 한다.</u></p> <p>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조례안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 ----- <u>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p> <p>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p>

조 례 안	수 정 안
<p>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서울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서울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li> <li>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li> <li>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li> <li>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li> </ol>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u>대행</u>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정기 또는 수시로 박람회를</u> 개최할 수 있다.</p>	<p>-----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조례안과 같음)</p> <p>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u> 전개할 수 있다.</p> <p>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안과 같음)</li> <li>2. (조례안과 같음)</li> <li>3. (조례안과 같음)</li> <li>4. (조례안과 같음)</li> </ol> <p>③ -----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 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 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심내에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추진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정원법 제18조의5에 따라 서울시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제11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전문가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

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정원박람회

**제17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

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0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